대 전 광 역 시　중 구

구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jjunggu.go.kr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1274호

2022. 1. 19.(수)

차　　례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8

안　내　문

▣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중구공보 발행일 : 매주 금요일(전자공보)　◎ 공보문건 접수마감 : 매주 목요일

※ **금요일이 휴일일 경우는 목요일에 발행**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다음호에 게재**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특별한 문건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문건은 게재할 수 없으니 각 실·과·소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 고시공고에 등재 후 시행문은 전자결재로 기획공보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는 전자공보로 구 홈페이지(민원·행정-행정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발행 : 대전광역시 중구 / 편집 : 공보담당(우34939)대전시 중구 중앙로 100 ☎ 606-6164, Fax 606-7910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2-77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입법취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 통보 등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위험도 평가단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다. 평가단원의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평가단원의 안전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사.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안전총괄과
- 전화: 042-606-7452, FAX: 042-606-79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총괄과(042-606-74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과 단원(이하 “평가단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진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④ 평가단장은 중구 안전도시국장으로 하며 위험도 평가를 총괄·조정한다.

⑤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⑥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안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전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험도 평가단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⑥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전광역시 및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앞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주 소 :

사 진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90㎜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Tel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90㎜

【관 계 법 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참고자료 **조례 표준(안)**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군·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시·도 및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지자체-관련단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협약서 (안)

OO시·군·구(OO시·도)와 OO협회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 구성·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OO시·군·구(OO시·도)와 OO협회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사항) 양 기관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과 관련한 주요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①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관리

② 위험도 평가단 교육 등 역량 강화

③ 위험도 평가단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 지원

④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3조(협약 이행) OO시·군·구(OO시·도)와 OO협회는 제2조의 협력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한다.

제4조(역할 및 운영) ① OO시·군·구(OO시·도)는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OO시·군·구(OO시·도)는 OO협회의 소속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한다.
2. OO시·군·구(OO시·도)는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3. OO시·군·구(OO시·도)는 위험도 평가단원에 대한 안전대책과 위험도 평가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4. OO시·군·구(OO시·도)는 위험도 평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② OO협회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지원하며 협약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OO협회는 소속 전문가를 OO시·군·구(OO시·도)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지원한다.
2.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된 OO협회 소속 전문가는 지진 피해 발생 시 OO시·군·구(OO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OO시·군·구(OO시·도)와 OO협회는 원활한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 이 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부협력 내용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1. 실무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OO시·군·구(OO시·도) 담당 과장 및 실무자와 OO협회 실무 담당자 구성 한다.
2. 협의회는 반기별로 정기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OO시·군·구(OO시·도)는 평가단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위험도 평가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OO협회는 보수교육 시 위험도 평가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평가단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OO시·군·구(OO시·도)와 OO협회는 협력하여 위험도 평가와 관련사항의 주민 안내 및 홍보 활동에 노력한다.

제7조(효력 및 유효기관) ① 본 협약은 각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연장 또는 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보 후 합의하여야 한다.

④ OO시·군·구(OO시·도) 및 OO협회는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해지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개정) 본 협약의 내용은 사전에 서면 동의를 거친 후 개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실과 내용을 법적 요구 혹은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타) 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을 체결 후 서명권자가 교체된 경우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00월

OO시·군·구청장
(OO시·도지사)

OO협회장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2 - 79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년 1 월 19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학생 심사기준 마련(안 별표)

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선발순위 결정 기준 마련(안 제4조)

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의 작성・관리(안 제5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8(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총무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606-6233), FAX(606-7912),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총무과 담당자 이정수(☎ 042-606-62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소정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4조(선발) 구청장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며,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

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장학생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별표의 항목 순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순위를 결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장학금은 대전광역시 중구 금고를 통하여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며, 관할 동장은 통장 및 장학생 모두에게 장학금 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평가기준(제4조 관련)

1. 총점배분

(단위 : 점)

합계	통장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상훈	장학금 수혜도	기타사항 (추가점수)
100	30	30	20	20	(0~35)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경력

(단위 : 점)

근속연수	5년 이상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점 수	30	25	20	15	10	5

※ 통장 경력 산정 기준일 : 해당연도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洞통보일 현재

※ 과거 통장경력 합산 인정 : 중구 타 동에서 통장을 역임했거나 연속하지 않은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단위 : 점)

<table>
<tr><td rowspan="4">학업
성적
우수
분야</td><td>고등학교신입생</td><td>A</td><td>B</td><td>C</td><td>D</td><td>E</td></tr>
<tr><td rowspan="2">고등학생
(대학생
신입생)</td><td colspan="5">5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td></tr>
<tr><td>90% 이상</td><td>80% 이상
90% 미만</td><td>70% 이상
80% 미만</td><td>60% 이상
70% 미만</td><td>60% 미만</td></tr>
<tr><td>대 학 생</td><td>4.0 이상</td><td>3.5 이상
4.0 미만</td><td>3.0 이상
3.5 미만</td><td>2.5 이상
3.0 미만</td><td>2.5 미만</td></tr>
<tr><td colspan="2">기능, 예능, 체육,
특기분야</td><td>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td><td>시 대표급,
시장 또는
시 교육감
표창수상자</td><td>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지원청
장
표창수상자</td><td>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수상자</td><td>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특기자</td></tr>
<tr><td colspan="2">점 수</td><td>30</td><td>25</td><td>20</td><td>15</td><td>10</td></tr>
</table>

※ 고등학교(대학교) 신입생은 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당시의 교과목 직전학기 성적

- 직전 학기 기준 : 정기학기 기준이며 계절학기 등 비정기 학기는 제외

※ 예·체능, 기능 분야의 경우 장학금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입상한 경우

※ 학생성적 기준 : 표의 점수 및 등급 이상을 범위로 하며 만점 기준은 4.5로 환산

다. 통장상훈

(단위 : 점)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시장	구청장
점 수	20	15	10	5

※ 최근 5년 이내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가장 높은 훈격 1개만 인정

라. 장학금 수혜도 (최근 5년 이내 통장자녀장학금 수혜횟수)

(단위 : 점)

수혜횟수	미수혜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점 수	20	15	10	5	0

마. 기타사항 (해당사항 합산점수 인정, 통장 본인 또는 장학생)

(단위 : 점)

구분	저소득계층		장애정도		다자녀 가정			타장학금 미수혜
	기초	차상위	심한	심하지 않은	4명 이상	3명	2명	
점 수	10	5	10	5	10	8	5	5

※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통장 본인 또는 장학생 1명만 인정하며 각각의 값을 합산하지 않음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통장 인적 사항	성 명			
	소 속	동 통장		
	생년월일	(남・여)	연락처	
	주 소			
	통장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장학생 인적 사항	성 명		한국장학재단 고객번호	
	생년월일	(남・여)	연락처	
	학 교 명	(대)학교 (과) 학년		
	장학구분	□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		없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의 방지) 등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에 따라 장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반환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있음( )	◦장학금 종류 : ◦수혜연도 : ◦수혜금액 :	

지급계좌 (장학생 또는 보호자)	은행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____년 ____학기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학교장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2. 전(前)학기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3. 재학증명서 1부	4. 지급계좌(통장) 사본 1통 5.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통 6. 통장 상훈 관계 서류 1부(해당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장학금 이중 수혜를 확인하거나,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및 국가,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 등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신청자, 자녀 모두 동의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학 교 장 추 천 서

장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학 교 명	(대)학교 (과) 학년		
재학 여부		재학( ) 휴학( ) 기타( )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		없음( )		
		있음( )	◦장학금 종류 : ◦수 혜 연 도 : ◦수 혜 금 액 :	
학교장 종합의견				

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학교장 (직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통장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소 속	동 제 통장		
	통장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장학생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교 학년		
	장학구분	□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통장상훈	(상훈명) (훈격) (수상일)			
수혜횟수	□ 미수혜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최근 5년 이내)*			
가정형편	(수급자 또는 차상위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장애여부	(대상) □ 본인 □ 자녀, (장애정도) □ 심한 □ 심하지 않은 *본인 혹은 장학생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자 녀 수	□ 4명 이상 □ 3명 □ 2명 □ 1명 이하			
타 장학금 수혜 여부	□ 미수혜 □ 수혜 (기관명: 금액: 원) *새마을, 의용소방대, 각 학교 장학금을 비롯한 타 장학금*			
동장 의견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____년 ___학기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동장 (직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학과)

○ ○ ○

위 학생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20○○학년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 ○ (직인)

[별지 제5호서식]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장

연번	동명	지급 연도	통장 인적사항		장학생 인적사항			지급액 (천원)	누적지급액 (천원)	누적 지급횟수
			성명	소속통	성명	학교	학년·학과			